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복 무 (근무)사 항	참 전 구 분				□6.25		□월남		□6.25 및 월남								
	소 속				□군인(①육군 ②해군 ③공군 ④해병) □경찰 □기타()												
	계 급 (직급)				군 번				병 과								
	입대(임용)일				제대(퇴직)일				복무(근무)기간								
주 요 참 전 내 용	참 전 기 간				참전지구(전투명)				소 속 부 대				특 기 사 항				
	~																
	~																
입 대 (참전)시 학 력	학 교 및 학년																
	휴 학 년 도				년도		졸업여부				□졸업 □미졸업						
가 족 사 항 (본인포함)	관 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학 력		직 업		월 소 득		비 고				
			-														
			-														
			-														
			-														
			-														
거 주 실 태			□자가 □전세 □월세 □수용 □의탁□기타()														
다 른 법 적용내 용			□국가유공자(보훈번호 :)														
			□국가유공자 유족(보훈번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관리번호 :)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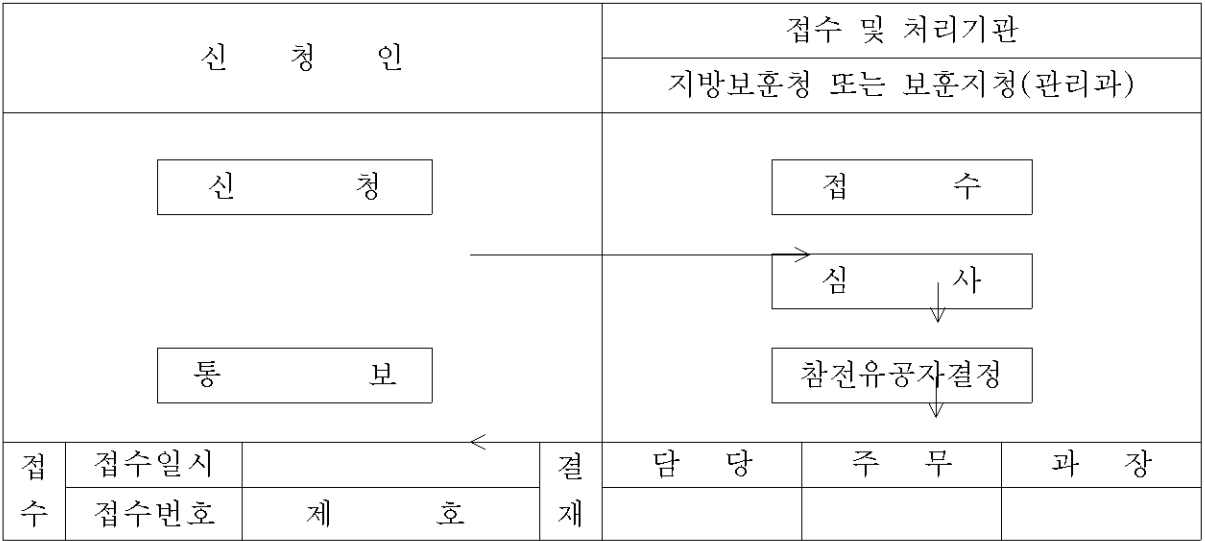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매	병적증명서.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빈 곳에 본적지(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지정 시 필요)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 제33-1호 서식]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용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한글)	참전등록번호			
		(영문)	생년월일 (성별)		-	
	영 주 권 (카드)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고인의 거 주 국 체류자격	※ 재외공관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국적	직업	주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신고일 현재 상기와 같은 체류자격으로 () 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주재공관장 귀하						
신고인은 신상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 주재공관장 (인)						

※ 신고인 거주국 체류자격란은 재외공관에서 기재하며, 공관장의 확인이 없는 신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뒷 쪽)

대 리 수 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아래 사람을 본인의 국내 대리수령인으로 선정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은 위임자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임자가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 등으로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신고지연으로 위임자의 보상금을 과오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위임자의 상속인과 연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대리수령인 인적사항(대리수령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주 소	계좌번호(거래은행)
				(☎)	()
위 임 장	※ 첨부 :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인) 대리수령인 (인) 보훈(지)청장 귀하				

< 본인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해 외 송 금 희 망 신 청 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아래 방법으로 해외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문으로 기재)		
	수권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희망 (해외 또는 대한민국 소재 은행 모두 가능함)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주소	
	주소지로 수표송금 희망	송금주소	
	※ 첨부 : 거래은행 계좌(수표) 사본 1부(계좌송금 희망자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인) 보훈(지)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대리수령 및 해외송금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일괄 조치하오니 매년 신상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해당기관으로 직접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①제출기일 : 년 2회(상반기 : 4월 20일, 하반기 : 10월 20일 까지) ②지 급 일 : 대리수령 → 매월 15일 지급, 해외송금 → 년 2회(5월, 11월) 2. 위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3.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보훈(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